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
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
(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44호
- 나. 제출자 : 엄셋별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감염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다른 법령과의 관계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라. 대상 지역(안 제4조)
- 마.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
- 바. 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(안 제6조)
- 사. 주민방역단 지원(안 제7조)

아. 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(안 제8조)

자. 비밀준수의무 및 협력체계, 홍보(안 제9조 ~ 제11조).

4. 관계법령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」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감염병 방역 지원과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
 - 안 제4조에서는 장소별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방역활동과 위생해충 구제 방안 시행에 대하여
 - 안 제5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, 위생해충 등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6조에서는 주민방역단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
 - 안 제7조에서는 주민방역단 지원에 대하여
 - 안 제8조에서는 위생해충 구제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1조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,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 - 최근 대구의 대학교 기숙사, 인천의 찜질방 등에서 발생한 빈대 출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.
 - 본 조례 제정안은 구민들을 위생해충 등에 의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조례로 시의적절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9. 29.] [법률 제19290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8., 2015. 7. 6., 2020. 3. 4., 2020. 12. 15.>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2.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
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
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6.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
7. 감염병병원체(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,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) 수집·검사·보존·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(藥劑耐性 監視)
8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- 8의2.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
9.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

10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·방역 물품의 비축
11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
12. 기후변화,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·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
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14.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15.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, 교육 및 훈련
16.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,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
17.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, 특성 분석,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, 보고서 발간 및 지침(매뉴얼을 포함한다) 고시

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6.>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·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6.>

제7조(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)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8. 11.>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5. 7. 6., 2020. 3. 4., 2020. 12. 15., 2021. 3. 9.>

1. 감염병 예방·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주요 감염병의 예방·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
- 2의2. 감염병 대비 의료·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
- 3의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 대응역량의 강화 방안
4.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
5.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
6.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6. 13.>

④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8. 11.>

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51조(소독 의무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,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(이하 “소독”이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3. 4., 2023. 6. 13.>

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신

설 2020. 3. 4.>

③ 공동주택,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3. 4.>

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·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8. 11., 2020. 3. 4.>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23. 9. 22.] [보건복지부령 제965호, 2023. 9. 22., 일부개정]

제36조(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)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,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(이하 “소독”이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9. 22.>

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14. 12. 31., 2020. 6. 4.>

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. <개정 2020. 6. 4.>

④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6. 4.> [제목개정 2014. 12. 31.]